

(부의안건요약서-참조3)

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추가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																				
1	성남시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·세출수정 예산안	☐ 제안이유 · 2002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·도비 보조내시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정리가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수 정 예산액</th><th>2002년도 당초예산액</th><th>증감액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790,623</td><td>813,856</td><td>△23,233</td><td>△2.9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534,953</td><td>530,996</td><td>3,957</td><td>0.7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255,670</td><td>282,860</td><td>△27,190</td><td>△9.6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수 정 예산액	2002년도 당초예산액	증감액	%	계	790,623	813,856	△23,233	△2.9	일반회계	534,953	530,996	3,957	0.7	특별회계	255,670	282,860	△27,190	△9.6	기획예산과	
구분	수 정 예산액	2002년도 당초예산액	증감액	%																				
계	790,623	813,856	△23,233	△2.9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534,953	530,996	3,957	0.7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255,670	282,860	△27,190	△9.6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·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	☐ 제안이유 · 국·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증감 등 여건변동으로 세입·세출 정리가 불가피하여 편성하게 되었음 ☐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제 3 회 추경예산액</th><th>기 정 예산액</th><th>증 감 액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1,004,986</td><td>989,776</td><td>15,210</td><td>1.5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620,255</td><td>630,483</td><td>△10,228</td><td>△1.6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384,731</td><td>359,293</td><td>25,438</td><td>7.1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제 3 회 추경예산액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계	1,004,986	989,776	15,210	1.5	일반회계	620,255	630,483	△10,228	△1.6	특별회계	384,731	359,293	25,438	7.1	기획예산과	
구분	제 3 회 추경예산액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																			
계	1,004,986	989,776	15,210	1.5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620,255	630,483	△10,228	△1.6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384,731	359,293	25,438	7.1																				

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추가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3	성남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분당구 야탑동에 건립한 성남제2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용어의 정의에 보조경기장(야구장), 빙상장, 체육회관(다목적체육관, 이벤트홀, 숙소, 에어로빅장, 스쿼시, 라켓볼, 헬스장)을 추가 (안 제2조제1호) · 위탁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일일사용시간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3조) · 제2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정하고 위탁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제2항) · 시설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제2종합운동장내에 시설되어 있는 수영장, 빙상장, 체육회관(다목적체육관, 이벤트홀, 숙소, 에어로빅장, 스쿼시, 라켓볼, 헬스장)을 추가하여 초·중·고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도·시 대표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(안 제13조 제4호, 제5호)	문화체육과	

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추가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비 고
4	성남도시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의견청취안	□ 제안이유 · 구 시가지인 수정·중원구 간선도로변 일원에 대하여 입지적 특성에 맞는 기능배분과 용도 지정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·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·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의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건을 청취함. □ 주요골자 ·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- 구 분 : 신설 - 지구명 : 수정·중원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- 위 치 : 수정·중원구 간선도로변 일원 - 면 적 : 중)607,582㎡	도 시 과	